실무위원회 개요

* 구성

실무위원회는 각 회원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국(청)장급 간부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1년 이상의 회의를 소집한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의장단체에서 부단체장으로 한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총회에서 실무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한다.

개별 프로젝트 등의 원활한 추진의 지원을 위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실무위원회의 보조기관으로서 개별 혹은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998.9 신설)

* 기능

헌장 제 11조는 실무위원회의 기능으로 6개 항목을 규정

1. 사업계획 및 개별 프로젝트의 협의

2. 연례보고서 및 회계보고서의 검토

3. 회원자치단체간의 의견 조정

4. 분과위원회(구성, 기능, 운영방법 등)에 대한 사항 결정(1998.9 신설)

5.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결정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